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6,826,084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거현천 거현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오수관로 이설)

나. 위 치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묘서리, 거현리 일원

다. 사 업 량 : 오수관로(Ø150mm)이설 L=56m, 오수관로(Ø300mm)이설 L=328m, 오수관로(Ø80mm)이설 L=44m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80,200,000원

[추정가격 : 72,909,000원, 부가가치세 : 7,291,000원]

바. 기초금액 : 금80,200,000원(금팔천이십만원)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8. 10.(월)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8. 14.(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14.(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540-4404)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을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 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84,374	995,679	101,576	508,902	4,435,553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다.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가.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지킴이대상은 노무비통장으로 제출>
-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라.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본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보은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 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치)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은군 업체·장비 사용 적극 권고)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합의 한 경우

1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건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서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43-540-4402)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43-540-4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0.

보은군하수도특별회계기업출납원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